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채현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42 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채현일 • 윤종군 • 박상혁

강득구 • 전재수 • 복기왕

한병도 · 김남근 · 모경종

윤건영 • 강훈식 • 정성호

김우영 • 부승찬 • 곽상언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「국가공무원법」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 「국가공무원법」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결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

인사혁신처의 인사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(안 제3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6절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감사 결과의 인사혁신처 통보)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「국 가공무원법」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 사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구체적인 절차,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5조의2(감사 결과의 인사혁신
	처 통보) ① 감사원은 감사 결
	과 「국가공무원법」과 그 밖
	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
	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의 모순
	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
	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
	체 없이 감사 결과를 인사혁신
	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구체
	적인 절차, 방법, 그 밖에 필요
	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
	<u>한다.</u>